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인공어초 설치해역에 대한 수로조사 미 실시

기 관 명 울산광역시

내 용

해양수산부는 지구온난화, 남획 등으로 황폐해가는 해양생태계와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중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·서식장을 조성하고자 인공어초 시설, 어초어장 관리 및 해중립 설치 등의 사업을 198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, 이에 울산광역시는 1998년부터 동 사업에 참여하여 [표]과 같이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[표] 인공어초 시설사업 추진 현황

<단위 : 백만원, ha>

연도	사 업 비			면적	비고
	계	국비	지방비		
계	15,001	12,001	3,000	1,580	
1998 ~ 2014	13,311	10,649	2,662	1,520	
2015	575	460	115	20	
2016	583	466	117	16	
2017	532	426	106	24	

※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「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(해양수산부훈령 제388호)」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집행기관은 설치가 완료된 어초에 대하여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

되어 있으며,

또한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행한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해양에서 인공어초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, 해저에서 흙, 모래, 광물 등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그 공사 등을 끝내면 수로조사를 하여야 하며, 수로조사를 한 자는 수로조사 성과를 지체 없이 한국해양조사협회(법령상 위탁기관)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울산광역시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인공어초 설치해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수로조사를 실시한 후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제출하여 필요시 수로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는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인공어초 설치해역에 대한 수로 조사를 2015년도에 실시(격년제로 실시)한 이후, 2016년도 및 2017년도 인공어초 설치해역에 대한 수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태풍 등 황천 시 선박이 동 해역을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.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

[시정] 예산확보를 통해 '16년 및 '17년 인공어초 설치해역에 대한 수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,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